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97.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재안이유

지역보건법('95.12.29 법률제5101호)에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 되어있는바 본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맡아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